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영유아 보육 기능 및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 통합을 위하여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및 1개 정책관등을 신설하면서 신설되는 영유아정책국의 1개 정책관등 및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고, 영유아 보육 기능 및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 통합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2명(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6.5. ~ 6.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운영지원과·인재정책실·책임교육정책실·교육복지돌봄지원국”을 “운영지원과·인재정책실·책임교육정책실·교육복지돌봄지원국·영유아정책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를 제20호로 한다.

7.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12. 늘봄학교(초등 방과후 과정 및 돌봄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책의 수립·시행

13. 지역사회와 연계한 늘봄학교 정책의 수립·시행

15. 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시행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영유아정책국) ① 영유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교육·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총괄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4.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실태조사

5.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6.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지원

7. 유치원·어린이집의 지도·감독

8. 영유아 교육·보육의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9. 영유아 교육·보육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10. 영유아 교육·보육의 지원 계획 수립·시행

11. 유아학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12.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애아·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유치원·어린이집의 설립·운영 지원
15. 유치원·어린이집의 평가
16. 유치원·어린이집의 안전·건강·보건·급식 등에 관한 사항
17. 유치원·어린이집의 시설·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교육·보육행정 관련 정보화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통합 추진 총괄
20.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통합 세부기준 수립 총괄
21.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관리체계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22.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통합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등~~과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23.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24.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25. 영유아 교원의 양성·자격·임용·연수 총괄
26. 영유아 교원양성기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7.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28.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개편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29.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프로그램 등 개편 지원에 관한 사항

제37조제3항 전단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를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42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640”을 “692”로 하고, 특정직 계 “85”를 “91”로 하며,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83”을 “89”로 하고, 일반직 계 “549”를 “59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1”을 “13”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530”을 “574”로 한다.

별표 3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유아정책국 1개 정책관등	1명
5) 영유아정책국 2개 과	8명

별표 4의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교육부장관의 검정 분야란 중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정 분야란 중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를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나목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다목을 삭제한다.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립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0조의6제8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6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6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7, 제20조의8제2항, 제21조의5제1항·제2항, 제21조의6제2항,

제21조의7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제23조의2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25조의5제1항·제2항·제3항, 제25조의7제1항·제3항·제4항, 제25조의9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제7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가목·나목,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나목,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1)·3)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3)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단서, 제25조의3제3항·제4항,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5항, 제26조의2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별표 1 제1호바목,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가목 및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를 각각 제1호·제2호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 시·도지사: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은 제외한다)인 사업장

3.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직무) 교육부는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 · 조 정, <u>인적자원개발정책</u> , 학교교 육 ·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직무) ----- ----- -- <u>인적자원개발정책</u> , 영유아 <u>보육 · 교육</u> ----- -----.
제4조(하부조직) ① (생 략) ② 교육부에 운영지원과 · 인재 정책실 · 책임교육정책실 · <u>교육 복지돌봄지원국</u> 및 교육자치협 력안전국을 둔다. ③ (생 략)	제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교육 복지돌봄지원국</u> · 영유아정책국 -----.
제12조(<u>교육복지돌봄지원국</u>) ① <u>교육복지돌봄지원국</u> 에 국장 1 명을 둔다. ② (생 략) ③ <u>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u> 1. ~ 6. (생 략) <u><신 설></u> 7. ~ 10. (생 략) 11. <u>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u>	제12조(<u>교육복지돌봄지원국</u>) ① <u>교육복지돌봄지원국</u>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u>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u> 8. ~ 11. (현행 제7호부터 제10 호까지와 같음) <u><삭 제></u>

12. 유아 교육비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3.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및 교원 관련 제도의 개선

14.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

15. 초·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시행

16.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돌봄 정책의 수립·시행

17. 초등 돌봄 정책의 수립·시행

18. (생략)

19. ~ 23. (생략)

<신설>

12. 늘봄학교(초등 방과후 과정 및 돌봄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책의 수립·시행

13. 지역사회와 연계한 늘봄학교 정책의 수립·시행

<삭제>

15. 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시행

<삭제>

<삭제>

14. (현행 제18호와 같음)

16. ~ 20. (현행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와 같음)

제12조의2(영유아정책국) ① 영유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영유아 교육·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총괄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4.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실태조사
5.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6.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지원
7. 유치원·어린이집의 지도·감독
8. 영유아 교육·보육의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9. 영유아 교육·보육의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
10. 영유아 교육·보육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11. 유아학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12.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애아 · 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유치원 · 어린이집의 설립 ·
운영 지원
15. 유치원 · 어린이집의 평가
16. 유치원 · 어린이집의 안전 ·
건강 · 보건 · 급식 등에 관한
사항
17. 유치원 · 어린이집의 시설 ·
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교육 · 보육행정 관
련 정보화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 · 어린이집 기관 통
합 추진 총괄
20. 유치원 · 어린이집 기관 통
합 세부기준 수립 총괄
21.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관
리체계 통합 지원에 관한 사
항
22. 유치원 · 어린이집 기관 통
합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 · 조정에 관
한 사항
23.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
직원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제37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5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

24.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25. 영유아 교원의 양성·자격·임용·연수 총괄

26. 영유아 교원양성기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7.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28.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개편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29.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프로그램 등 개편 지원에 관한 사항

제37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42조(한시 정원) ① 삭제 ② (생략) ③ <u>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4월 30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u> <u>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④ ~ ⑥ (생략)	-----. ----- ----- ----- -----. 제42조(한시 정원)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40</u>	<u>692</u>	+52
•	•	•	
•	•	•	
특정직 계	<u>85</u>	<u>91</u>	+6
•	•	•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u>83</u>	<u>89</u>	+6
일반직 계	<u>549</u>	<u>595</u>	+46
고위공무원단	<u>11</u>	<u>13</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30</u>	<u>574</u>	+44
•	•	•	

[별표 3]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0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현행	개정안
1)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	3명	·
2) 차관보	1명	·
3) 사회정책협력관 1개 담당관	7명	·
4) 영유아정책국 1개 정책관등	<신설>	<u>1명</u>
5) 영유아정책국 2개 과	<신설>	<u>8명</u>

[별표 4]

교육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2조 관련)

한시정원	현 행	개정안
2. 제42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4월 30일)		<u><삭 제></u>
총계	1	<u><삭 제></u>
일반직 계	1	<u><삭 제></u>
5급 이하	1	<u><삭 제></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08